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제출년월일 : 1993.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청주시 남성중학교와 강중학교의 신설 및 행정구역(통) 신설
- 충주시 충주중앙중학교의 신설
- 통학편의를 위하여 주민의 변경요구가 있는 일부 지역 학구 조정

□ 주요골자

- 청주시에 신설된 남성중학교를 제1학교군, 울랑중학교를 제2학교군 중학교에 추가
- 청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의거 통이 신설된 성화개신죽림동 18-25통을 제1학교군으로, 26통을 제3학교군으로 추가
- 충주시에 신설된 충주중앙중학교를 충주시 학교군에 추가
-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를 목도중학구와 장연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
-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를 용문중학구와 옥천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
-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를 청산중학구와 옥천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

□ 제안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청주시 통반설치조례('91.12.26. 제1648호 및 '92.12.31. 제1681호)

□ 조 례 안 : 덧 붙 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규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 산 상 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예고문 사본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청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사본 : 덧붙임
- 영동교육장 공동학구 의견서 : 덧붙임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별표중 청주시 제1, 2, 3학교군, 충주시 학교군, 괴산군 목도중학구 및 장연중학구, 옥천군 옥천중학구 및 청산중학구, 영동군 용문중학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 학교군 및 중학구별 일람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고
			지역명	해당 지역	
청주시	청주시 제1학교군	청주시 관동중학교, 청주시 서문중학교, 청주시 남문중학교, 청주시 중앙중학교, 청주시 남부중학교, 청주시 서부중학교, 청주시 동부중학교, 청주시 북부중학교, 청주시 남부중학교, 청주시 서부중학교, 청주시 동부중학교, 청주시 북부중학교	청주시	문화북1남2가동, 서운동남1가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대성동, 모충동, 사직제2동, 영운동, 관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동, 정방서동, 사창동(1-6, 11-19, 23, 25-28, 39-41, 46동), 성화개신죽림동(1, 2, 4, 6-12, 18-25동), 산미분장동, 수곡동	
		청원군 일면	송암리, 호촌리, 쌍수리, 신송리, 가중리, 가산리, 화당리, 고은리		
		남이면	팔봉리, 석실리, 석판리, 가마리,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철북리, 사동리, 천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구암리, 상발리		
		낭성면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가덕면	상대리		
		문의면	동동리(위동골)		
청주시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시 성안중학교, 청주시 양성대중학교, 청주시 대동중학교, 청주시 양성대중학교, 청주시 대동중학교	청주시	영동북2가3가동, 사직제1동, 운천신봉동, 수동, 우암동, 강서제2동, 사창동(8-10, 20-22, 31-35, 38, 42-45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봉명제1동(18-20, 22동 제외), 봉명제2동, 송정동(1, 2동 제외), 오근장동	
		청원군 북일면	목방리, 구성리, 국동리, 원통리(슌안, 청애원, 봉천), 은곡리1구		
청주시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북대중학교, 서원남대중학교, 서원북대중학교, 서원남대중학교	청주시	강서제1동(12, 26동 제외), 북대제1동, 가경북대제2동, 성화개신죽림동(3, 5, 13-17, 26동), 봉명제1동(18-20, 22동), 봉명제2동, 송정동(1, 2동), 사창동(7, 24, 29, 30, 36, 37, 47동)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		
충주시	충주시 학교군	충주시 일덕중학교, 충주시 서부중학교, 충주시 동부중학교, 충주시 북부중학교, 충주시 남부중학교, 충주시 서부중학교, 충주시 동부중학교, 충주시 북부중학교, 충주시 남부중학교	충주시	전지역	
		충원군 가금면	누암리, 창동리		
		이류면	본리, 완오동, 검단리, 장성리, 만정리, 두정리, 탄옹리, 매현리, 문주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충주중앙중	살미면 동량면	전지역 화암리, 서우리	
괴산군	목도중학구	목 도 중	괴산군 불정면 감물면 장연면	전지역 이담리, 구월리(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조곡리	이담리(대성동), 구월리(주월리, 울리) : 감물중학구와 공동학구 조곡리 : 장연중학구와 공동학구
	장연중학구	장 연 중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추절리, 오가리, 송덕리(북거리 제외),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 제외) 조곡리	조곡리 : 목도중학구와 공동학구
옥천군	옥천중학구	옥 천 중 옥천여중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안내면 동이면 동이면 청성면	전지역 전지역 자모리, 이백리, 지오리, 환평리, 증악리, 주소리, 구건리, 소정리, 석호리, 이평리(공국제외), 막자리, 옹호리(방개제외) 답양리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조령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합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묘금리(옹동), 양저리, 삼남리	동이면 청마리(갈마골 제외),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제외), 청성면 고당리, 안내면 우산리, 조령리 :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조천리, 묘금리(옹동), 양저리 :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삼남리 :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산중학구	청 산 중	옥천군 청산면 청성면	전지역 (만월리중 다래실골 제외) 삼남리, 궁촌리, 소소리, 장수리, 구읍리 산계리, 거포리, 장연리, 화성리 (소화동 제외)	삼남리 :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영동군	용문중학구	용 문 중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전지역 (시금리 제외) 조천리, 묘금리 (용동), 양저리	조천리, 묘금 리 (용동), 양 저리 :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 산 상 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예고문 사본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청주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사본 : 덧붙임
- 영동교육장 공동학구 의견서 : 덧붙임

신 · 구 대 비 표

현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주시	청주시 제1학교군	청주남중	청주시	문화북1남2가동, 서운동남1가			
		청주동중		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						
		세 광 중		대성동, 모충동, 사직제2동, 영						
		운 호 중	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청주여중		용암옹정방서동, 사창동 (1-6,						
		충북여중		11-19, 23, 25-28, 39-41, 46통)						
		일신여중		성화개신죽림동 (1, 2, 4, 6-12						
		청 운 중		통), 산미분장동, 수곡동						
			청원군					남 성 중		
			남이면	송암리, 효촌리, 쌍수리, 신송						
				리, 가중리, 가산리, 화당리,						
				고은리						
			남이면	팔봉리, 석실리, 석판리, 가마						
				리,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척						
				복리, 사동리, 척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구암리, 상발리						

현					평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고
			지역명	해당 지역					지역명	해당 지역	
			남성면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가덕면	상대리					
			문의면	동동리(위동골)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중 주상중 대성중 중앙중 중앙여중 대성여중 봉명중	청주시	영동북2가3가동, 사직제1동, 운천신봉동, 수동, 우암동, 강서제2동, 사창동(8-10, 20-22, 31-35, 38, 42-45통),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을량사천동, 봉명제1동(18-20, 22통 제외), 봉명제2동송정동(1, 2통제외) 오근장동			
			창원군 부일면	무방리, 구성리, 국동리, 원봉리(숲안, 청애원, 통천), 운곡리1구				

현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괴산군	목도중학교	목 도 중	괴산군 불성면 감물면 장연면	전지역 이담리, 구월리(주월리, 율리) 오창리(하유창) 조곡리	이담리(대정·주월리 제외) 구월리(율리 제외) 오창리(하유창 제외) 조곡리
	장연중학교	장 연 중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추점리, 오가리, 송덕리(북거리 제외),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 제외)	
단천읍	단천중학교	단 천 중	영천면 관서면 구룡면 안내면	전지역 전지역 자모리, 이백리, 지오리, 황평리, 중앙리, 추소리, 구건리, 소정리, 석호리, 이평리(양곡 제외), 막자리, 옹호리(방개 제외) 답양리	막자리(양곡 제외) 관서면(이백리 제외) 구룡면(지오리 제외) 안내면(답양리 제외)

면					경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조영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면 동 리
			청성면	합곡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묘곡리(용동), 양저리, 삼남리	
	청산중학교	청 산 중	육천리	전지역(만월리중 다래실골 제외)					면 동 리
			청산면	전지역(만월리중 다래실골 제외)					삼남리	
			청성면	삼남리, 공촌리, 소소리, 장수리, 구음리, 산계리, 거포리, 장연리, 화성리(소화동 제외)					
영동군	영동중학교	영 동 중	영동면	전지역(시곡리 제외)					면 동 리
			용산면	전지역(시곡리 제외)					
			육천리	전지역(시곡리 제외)					
			청성면	조천리, 묘곡리(용동), 양저리					조천리, 묘곡리(용동), 양저리	

행 정 예 고 문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학교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제추진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3년 9월 11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1. 개정취지

1994학년도 신설학교 설립(남성중, 울랑중)과 청주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제1648호, 제1681호)에 의한 성화개신죽림등의 18-26통신설(분통)되었기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학교구에관한조례에 신설학교와 해당지역을 삽입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학교군내 중학교 신설

현		개		비고
학교군(구)	중 학교 명	학교군(구)	중 학교 명	
제1학교군	청주남중, 청주동중, 세광중, 운호중, 청주여중, 충북여중, 일신여중, 청운중	제1학교군	청주남중, 청주동중, 세광중, 운호중, 청주여중, 충북여중, 일신여중, 청운중, 남성중	
제2학교군	청주중, 주성중, 대성중, 중앙중, 중앙여중, 대성여중, 북명중	제2학교군	청주중, 주성중, 대성중, 중앙중, 중앙여중, 대성여중, 북명중, 울랑중	

나. 행정동 : 신설(분통)

현			개			비고
행정운영동명	1 학교군	3 학교군	행정운영동명	1 학교군	3 학교군	
성화개신죽림동	1, 2, 4, 6-12통	3, 5, 13-17 통	성화개신죽림동	1, 2, 4, 6-12, 18-25 통	3, 5, 13-17, 26통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과(275-7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중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제 추진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993. 9. 6.

충청북도충주교육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행정예고

1. 개정취지

과대학교 본리 및 과밀학급 완화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신설학교 설립(충주중앙중)

2. 주요내용

과대학교 본리 및 과밀학급 완화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신설학교 설립에 따라

충주시학교군 조례개정(충주중앙중)

0. 중학교학교군 신. 구 대조표

현						변					
시군별	학교군 (구)	중 학 교 명	학군(구)소속지역			(구)	중 학 교 명	학군(구)소속지역			
			지역명	해당지역	비고			지역명	해당지역	비고	
충주시	충주시 학교군	충주중 충일중 미덕중 충북어 충어 충예어	충주시 충현군 가곡면 이류면 삼미면 방면	전 지역 · 누암리 · 창동리 · 본리 · 한오동 · 김단리 · 감성리 · 만정리 · 두정리 · 매현리 · 본주리 · 전지역 · 화암리 · 시운리		충주시 학교군	충주중 충일중 충미중 충영중 충북어 충어 충예어	충주시 충현군 가곡면 이류면 삼미면 방면	전 지역 · 누암리 · 창동리 · 본리 · 한오동 · 김단리 · 감성리 · 만정리 · 두정리 · 매현리 · 본주리 · 전지역 · 화암리 · 시운리		

3. 예고기간 : 1993. 9. 6 - 1993. 9. 25

4.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참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4 - 3212, 44-3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행 정 예 고 문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제추진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2. 10. 30.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

1. 개정 취지

장연면 조곡리 중학구를 현재 목도중학구에서 목도중, 장연중 공동 학구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학교군(구)	중학교명	현 행		개 정 (안)	
		학교군(구) 소재지역		학교군(구)소재지역	
		지역명	해당지역	지역명	해당지역
목도중학구	목 도 중	불정면	전 지 역	불정면	전 지 역
		감물면	이담리, 구월리(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감물면	이담리, 구월리(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장연면	조곡리	장연면	조곡리
장연중학구	장 연 중	장연면	광진리, 추점리, 오가리, 송덕리(북거리제외),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제외)	장연면	광진리, 추점리, 오가리, 송덕리(북거리제외),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제외), 조곡리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1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육장(참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괴산교육청 관리과 (33-0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예 고 문

○ 충청북도중학교 학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제 추진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993 년 9 월

충청북도우천교육청



1. 개정 취지

- 1994학년도 중학교 학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 용문, 청산중학구를 우천, 용문, 옥천, 청산중학구의 공동학구로 개정코자 함.

2. 주요 글자

- 중학교 학구 조례 개정

현		향		개 정 (안)			비 고
학교(구)	중학교명	해 당 지 역		학교(구)	중학교명	해 당 지 역	
용문중학교	용 문 중	옥천, 청성, 묘 금리(용동), 조천, 양저리	옥천, 용문 중학교	우 천 중 우 천 여 용 문 중	우 천, 청성, 묘 금리(용동), 조천, 양저리	우 천, 용 문 중 학교	
청산중학교	청 산 중	우천, 청성, 삼 밭리	우천, 청산 중학교	우 천 중 우 천 여 청 산 중	우천, 청성, 삼 밭리	우 천, 청 산 중 학교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우천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우천교육청 관리과(32-1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예 고 문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구 및 학교구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예고추진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3년 9월 10일

충청북도영동교육청



1. 개정취지

육천군 요금국민학교 학교구의 모든주민은 생활권이 육천으로서 귀고졸업후 영동중학교 진학시 고교진학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학교를 조정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함.

2. 주요골자

현			영		개			정 (안)		비	고
시 군 별	중 학 구	중 학 고 명	학교(구)소속지역		시 군 별	중 학 구	중 학 고 명	학교(구)소속지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지역명	해 당 지 역		
영 동 군	영동국민학교	영동	영동면 영선면 영오면 영향면	전지역(시금리 제외) 조천리,요금리 (용동),양저리	영 동 군	영동국민학교	영동 영선면 영오면 영향면	전지역(시금리 제외) 조천리,요금리 (용동),양저리	육천군 청성면 조천리,요금리 (용동),양저리 영동중학교와 영동국민학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충청북도영동교육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관리과 (0414) 42-00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입학등의 허가)

③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다만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 이하 생략

⑥제3항의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며 이하 생략

청주시의회 의결을 얻은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주 시 장

1113



1991년 12월 26일

청주시 조례 제 1648 호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내덕2동, 을량사천동, 탑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모충동, 운천신봉동, 산미분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 복대재1동, 가경복대재2동, 봉명재1동, 봉명재2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일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 명	통	반	관 할 구 역 (지 번)	비 고		
산미분수곡동	79	5	수곡동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1동 1301호~1312호, 1401호~1412호 1501호~1512호	신설		
		1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2동 101호~112호, 201호~212호 301호~312호	"		
		2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2동 401호~412호, 501호~512호 601호~612호	"		
		3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2동 701호~712호, 801호~812호 901호~912호	"		
		4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2동 1001호~1012호, 1101호~1112호 1201호~1212호	"		
	80	5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2동 1301호~1312호, 1401호~1412호 1501호~1512호	"		
		1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3동	"		
		2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4동	"		
		3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5동 101호~506호	"		
		4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5동 107호~510호	"		
		5	" 160 산남주공3차아파트 306동	"		
		성화개신죽림동	3	4	개신동 550~582	"
				5	" 492~500, 507~516, 526~549	"
			18	1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1동 101호~1502호	"
		2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1동 103호~1505호	"	

별표 1

동 명	동	반	관 할 구 역 (지 번)	비 고
성화개신죽림동	19	3	개신동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2동 101호~1502호	시 설
		4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2동 103호~1505호	"
		5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2동 106호~1507호	"
		1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3동 101호~1502호	"
		2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3동 103호~1505호	"
		3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5동 101호~1502호	"
		4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5동 103호~1505호	"
		5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5동 106호~1507호	"
		6	" 449의3 송학삼익맨션아파트 105동 108호~1509호	"
		복대1동	19	1
2	" 132의2,132의4~132의7,132의9, 132의 11,132의12			"
3	" 133,133의1,133의2,134의2,134의7,134 의8,135의1,135의8,135의9			"
4	" 134의1~134의4, 136의1, 136의3, 137 137의7, 137의12~137의14,146			"
5	폐 지			폐 지
	21	1	복대동 230의1,230의4,230의5,230의22~230의 26,230의34~230의38,230의58,266의46 266의48,266의51	개 정

청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주 시 장

W 기



1992년 12월 31일

청주시 조례 제 1681 호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청주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중 영동북2,3가동, 우암동, 내덕1동, 내덕2동, 울량사천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오근장동, 사직1동, 사직2동, 모충동, 운천신봉동, 산미분장동, 수곡동, 성화개신죽림동, 가경북대2동, 봉명1동, 봉명2송정동, 강서1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일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동 명	동	반	관 할 구 역 (지 번)	비 고
성화, 개신, 독립동	6	1	개신동1의13,2의7~2의13,2의15~2의19,2의21,2의22,2의57,442의3,442의4	개정
		2	개신동438의1,438의3~438의5,438의7,438의8,4의11,438의14~438의17,438의46~438의438의77~438의83,438의85,438의87,438의101~438의102,산99의2	"
		3	개신동산95의2,437의12,437의14,438의62~438의76 438의88~438의97	"
		4	개신동438의20~438의45,438의94	"
		5	폐 지	"
	8	5	폐 지	"
		13	1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1동101호~1502호
		2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1동103호~1504호	"
		3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1동105호~1305호 106호~1006호	"
		4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4동101호~1502호	"
		5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4동103호~1504호	신설
		6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4동105호~1506호	"
		7	개신동283 현대아파트 104동107호~1507호 108호~908호,상가	"
20	1	개신동2의23,2의26,2의29,3의3,3의5,4의4~4의7~4의9~4의11,4의15~4의18	"	
	2	개신동2의32~2의37,2의41,2의42,4의19~4의22 4의24~4의27,4의29~4의32	"	
	3	개신동4의35,4의40~4의46,4의55,52의8	"	
	4	개신동42의2,42의5,42의12,43의4,43의9~43의10 43의14,43의17,43의18,44의4~44의6,45의2	"	
	5	개신동산12의5 중대교수APT	"	

별 표 1

동 명	동	반	관 할 구 역 (지 번)	비 고
성화.개신.죽림동	21	1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1동101호~1202호	신설
		2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1동103호~1204호	"
		3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1동105호~1206호	"
		4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3동101호~ 901호 102호~1302호	"
		5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3동103호~1304호	"
		6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3동105호~1306호	"
		7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5동101호~1202호	"
		8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5동103호~1204호	"
	22	1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2동101호~1202호	"
		2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2동103호~1204호	"
		3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2동105호~1206호	"
		4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4동101호~1302호	"
		5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4동103호~1304호	"
		6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4동105호~1305호 106호~1106호	"
		7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6동101호~1202호	"
		8	개신동11 삼익아파트 206동103호~1204호	"
	23	1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1동101호~1502호	"
		2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1동103호~1504호	"
		3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1동105호~1506호	"
		4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1동107호~1508호	"
	24	1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2동101호~1102호	"
		2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2동103호~1504호	"
		3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2동105호~1506호	"

별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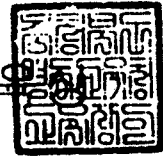
동 명	동 반	관 할 구 역 (지 번)	비 고	
성화, 개신, 죽림동	24	4 개신동443 두진아파트 102동107호~1507호 108호~1008호	신설	
	25	1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1동 101호~1502호	"
		2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1동 103호~1504호	"
		3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1동 105호~1506호	"
		4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1동 107호~1508호	"
		5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2동 101호~1402호	"
		6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2동 103호~1404호	"
		7	개신동102의1두산한솔아파트102동 105호~1506호	"
	26	1	개신동566~582	"
		2	개신동538~557	"
		3	개신동526~537, 558~565	"
		4	개신동507~525	"
	가경, 복대2동	10	4 폐 지	
			5 폐 지	
6 폐 지				
12		1	복대동1925~1941	개정
		2	복대동1942~1957	"
		3	복대동1958~1970	"
		4	복대동1971~1986	"
		5	복대동1987~2007	"
14		4	폐 지	
		5	폐 지	
		6	폐 지	

의 건 서

영동군 옥천중학교 학구인 옥천군 청성면 두들리국민학교의 직천군, 두들리(응동), 양서리
부락의 생활권이 옥천으로서 국교졸업후 옥천중학교 진학시 중도에 옥천시 역으로 전학
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중학교 학구부터 옥천으로 전학하기를 원하고
있어 옥천중학교와 공동학구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3. 9. 18.

충청북도영동교육청 교 육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천원)

순번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1	충주공고 학생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92. 9. 28.	35,000	35,000	0	

예비비지출조서

1. 건 명 : 충주공고 학생치사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 요 액	차액부족액 (예비비 지 출)
관	항	세항	목					
2. 교 육 사 업 비				50,000	0	50,000	85,000	35,000
	1. 본 청 운 영 비			50,000	0	50,000	85,000	35,000
		2. 기획감사행정관리		50,000	0	50,000	85,000	35,000
			314 배 상 금	50,000	0	50,000	85,000	35,000
합 계				50,000	0	50,000	85,000	35,000

2. 예비비 지출사유

충주공고 학생치사 사건이 청주지방법원에서 패소 판결('92. 8. 26)되어 '92. 9. 30일 까지 85,0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92. 9. 17)되었는 바, 기정예산액이 50,000,000원으로 부족액 35,000,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3. 참고서류

- 합의서 사본 1부.
- 판결문 사본 1부.

합 의 서



사건의 표시 : 청주지방법원 91가합6372호

원고 신승배외 3인, 피고 충청북도 (교육감)

손해배상 (기)

1992. 8. 26. 판결선고된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2. 9. 30. 까지 금 팔천오백 만원을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위금원 이외의 나머지 금원 및 항소권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피고가 위 1항 기재 약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
5. 원고들은 위 1항 기재 금원의 수령시 영수증에 인감을 날인하고 합의용 인감증명 각 1통씩을 피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한다.
6.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1992. 9. 17.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 준



청 주 지 방 법 원

199 2 8 . 2.6판결선고	주사
199 2 8 2 6 . 원본영수	인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1가합6372 손해배상(기)

- 원 고 (1) 신 승 배 (辛 承 培)
 (2) 안 미 원 (安 美 元)
 (3) 신 종 희 (辛 宗 禧)
 (4) 신 종 복 (辛 宗 馥)

원고들 주소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미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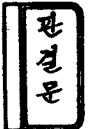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승배,

모 안미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학림

피 고 충청북도



대표자 충청북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준

변론종결 1992. 7.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42,811,932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42,011,932원, 원고 신종희, 신종복에게 각 금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4.15.부터 1992.8.26.까지 연5푼, 1992.8.27.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63,856,665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62,856,66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1.4.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급계7호증외3내지 24, 을계3호
증외3,4, 을계4호증외 1내지3외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
건 사고의 개요 및 그 피해자와 원고들의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의 개요

(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충주공업고등학교 (이하 충주공고라 한다) 학생회내에는
학생들의 규율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12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있고, 1991.4
경 소의 진경수가 그 지도 담당교사로서 지도부 학생들을 지시 감독하고, 소의 권용기
는 학생과장으로서 전교생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회 간부들과 지도담당
교사가 윤바로 생활지도를 하도록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지도부
학생들은 학생과 교사들의 통솔아래 1일 4명씩 교대로 08:00부터 09:00까지 교문에
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용모 복장등을 단속하고, 1주에 1회 정도 교내를 순회하여 학생
들의 용모 복장등을 단속하여 왔다.

(나) 위 진경수는 평소 지도부 학생들에게 학생들 생활지도에 있어 훈화와 설득으로 규율을 바로잡고, 폭행을 하지 말 것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진경수의 감독아래에 서가 아니면 교실에서의 규율단속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며 이를 감독하여 왔으나, 지도부 학생들은 1991.4.경 당시 월3,4회씩 대개 월요일 아침에 4명 내지 5명이 허급생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 복장검사를 하여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은 지도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사의 감독아래 교실에 들어가서 규율단속을 하고, 허락없이 교실에 규율단속하러 들어가거나 학생들을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할 뿐 그 이상 지도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1991.4.8에도 지도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규율단속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지도부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삼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타이른 정도에 그치고, 지도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규율단속을 하며 학생들을 폭행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거나 교내순시등을 강화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지도부 학생들은 1991.4.16. 학생들의 용모상태가 나쁘다면서 점검을 할 것을

결의하고, 교사들이 직원조회에 참석중인 08:40경 지도부원인 소외 강종호외 4인이 교실을 순회하며 용모검사등을 하였는데, 토목과 2학년1반 교실에는 지도부원이 아닌 소외 김동수가 지도부원과 같이 따라 들어가 용모검사를 하면서 머리가 길던 위 망인등을 교실뒤로 세운 다음 위 강종호, 김동수가 가까이 서있던 위 망인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씩 때리고 앞으로는 머리를 각으라고 주의를 준 다음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자 위 망인이 두 발자국 걸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장쇼크로 사망하였다.

(2) 가족관계

원고 신승배, 안미원은 위 망인의 부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 자매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주공고 학생과 교사들인 위 권용기, 진경수씨는 지도부 학생들이 월3,4회씩 하급생 교실에 들어가 용모가 단정케 못한 학생들을 폭행하여 온 사실을 잘 알았으면 그러한 일이 근절되도록 지도및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것으로서, 피고는 공무원인 위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 피고는 위 망인이 평소 고내생활에 있어 흡연, 두발 및 복장상태 불량등으로 지도부 학생들 및 3학년학생들로부터 수차례 걸쳐 지적을 받고 지도를 당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이를 시정치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3학년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이유가 될수는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입실수입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계1,3,4,5,6호종의 각 기재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연병,가동상황 및 수입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망인은 1974.2.21.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7세1개월 남짓의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 평균연령은 51.42년이다.

(나) 위 망인은 1991.2.11. 내선공사기능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달 19. 국가기술자격등록이 되었다.

(다) 내선전공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1일 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1.4. 현재 금23,200원이다.

(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생계비로 소비할 금원은 그 수입의 1/3정도가 된다.

(마) 내선전공으로는 매월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종사할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성년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치는 1996.8.21.부터 그 기대여명의 범위내에서 60세에 이르는 2034.2. 21.까지 450개월동안 적어도 내선전공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부분만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손차 발생할 그 손해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12분의5분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액은 금 84,023,865 {23,200×25×2/3×(274.7181 - 57.4150)}, 원 미만 버림, 이하같다} 원이 된다.

원고 신승배, 안미원은 위 망인의 일일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무렵의 내선

전공의 시중노임단가인 금 31,330원을 기초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중노임단가는 그 기준적용 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가 분명치 아니하여 객관성이나 보편성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장폐비

원고 신승배가 그 아들인 위 망인에 대한 장폐비로 금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득공제

을 제1호증외5의 기재에 본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측은 위 강종호, 김동수측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금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74,023,865(=84,023,865 - 10,000,000)원만이 남는다.

락.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 모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앞서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위 망인에 대하여 금7,000,000원, 원고 신승배, 안미원에 대하여 각 금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700,000원씩으로 합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입은 손해는 금81,023,865(=74,023,865 + 7,000,000)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본에 따라 원고 신승배, 안미원이 각 금40,511,932(=81,023,865 × 1/2)원씩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승배에게 금42,811,932(=40,511,932 + 1,500,000 + 800,000)원, 원고 안미원에게 금42,011,932(=40,511,932 + 1,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1.4.1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2.8.26.까지 민법 소정의 연5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소정의 연2할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 8. 26.

재판장	판	사	한	종	원	_____
	판	사	유	병	일	_____
	판	사	경	일	원	_____

정본입니다.

19 년 월 일

청 주 지 방 법 원

법원주사 김 응

